

붙임1 판단기준 및 점검사례

구분	내용
판단 기준	○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약관의 전문인수에 포함되는 실제근무인원 산정기준 - 전문인에 해당하는 직종: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사회복지사 - 근무인원 산정기준: 근무시간 관계없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1인으로 산정 · 야간근무(교대근무)직원: 0시~24시 기준 근무일 각각 산정 예) 8. 14. 21:00~8. 15. 06:00 근무했을 경우 8.14., 8.15. 각각 1인으로 산정 · 월 중 전문인에 해당하는 직종변경 시 변경 이후부터 1인으로 산정 예) 8. 1.~8. 14. (요양보호사), 8. 15.~8. 30. (보조원) → 8. 1.~8. 14. 1인으로 산정 · 세부사항 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,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 제외

구분	내용
사례	○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약관 - 보험기간: 2023. 9. 1.~2033. 9. 1.(10년) - 청약일: 2023. 9. 1. - 보장내용: 피보험자가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치과위생사,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- 시설 전문인수: 8명 2023. 9.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없이 청구 및 지급 받았으나, 2023. 9. 15.~9. 30. 전문인에 해당하는 직종 실제근무인원* 9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* 실제근무인원: 가산산정을 위해 월 기준근무 이상 근무로 산정되는 근무인원이 아닌, 해당 일자에 실제 근무(출근)한 인원
판단	▶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전문인수 8명, 전문인 실제 근무인원 9명 → 미가입 1명 - 2023. 9. 15.~9. 30. 미가입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 급여비용 10% 감액